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
시행규칙제정안

제출자	국무위원 원희룡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제정이유

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 도모와 국가 경쟁력 강화 이바지를 위한 「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」이 제정·공포(‘23.10.24.)됨에 따라,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(시행규칙)을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·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준용하도록 규정(안 제2조)
- 나. 매입·매각 승인대상 토지의 범위를 감정평가 가격과 일정 규모이상의 토지를 규정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」 및 「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」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없음
- 라. 기 타 :

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료 등의 징수) 「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이 소유·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·징수금액 및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공항운영자”는 “공단”으로 본다.

제3조(매입·매각 승인대상 토지의 범위)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”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.

1. 감정평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의 토지
 - 가. 매입의 경우 : 20억원
 - 나. 매각의 경우 : 10억원
2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의 토지
 - 가. 매입의 경우 : 6천제곱미터
 - 나. 매각의 경우 : 5천제곱미터

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설추진단	
연 락 처	(044) 201 - 5209